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9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상정된 안건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 1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 간 상정하기로 합의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0시12분)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1항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생명안전기본법 논의해 주시는 서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새겨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박주민 의원, 용혜인 의원,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25년 3월 10일 제안이 됐고 7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1월 18일 날 소위에 상정됐었고요. 25년 12월 16일 날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체 구성체계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총칙에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서 안전, 안전사고, 피해자, 안전약자, 안전관련기준 등을 정의하고 있고요. 안전권을 도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등의 책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영향 분석·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4장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보장 지원의 원칙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공개,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그리고 기억과 추모, 공동체 회복,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안전약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괄 검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안전권을 명시하고 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려는 취지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5년 12월 16일 입법공청회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하나의 기본법 체계가 적절하고 별도 법률의 제정보다는 재난안전법 개정 등 보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는 있으나 제정안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완이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총괄적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정안을 재난을 포함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최상위 기본법으로 위치시키려고 한다면 재난안전법을 비롯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가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나 안전관련기준 및 안전수준 진단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목적 및 기본이념입니다.

본 제정안은 일정한 규정 사항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이념으로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념과 관련해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기본이념)의 1항에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고 2항, 3항, 4항을 보시면 이 부분이 국가등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후에 6조(국가등의 책무) 쪽과 중복적으로 규율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조(국가등의 책무)에서 일괄적으로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수정의견에 ‘국가’로 일원화한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국가등 이렇게 일원화……

○소위원장 서범수 국가에 의한……

아니, 5페이지의 조문을 보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 조사 주체를 국가로 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국가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 기본이념과 관련해서는 2항, 3항, 4항은 삭제하는 걸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안 제3조(정의) 조항입니다.

정의조항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안전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재난+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로 들어가 있고요. 안전약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 안전관련기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법률에서는 안전사고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더라도 안전사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조문대비표 제3조 2호를 보시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로 위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일단 1호·2호로 규정하여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3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자 유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란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위임하는 것으로 했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피해자의 유형을 1·2·3·4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안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제정안의 피해자에 비해서는 범위를 조금 축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약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약자를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환자, 노숙인 등,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이주민 등 가에서 타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약자 유형 중에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로 정의를 했고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상 노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련기준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후 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을 하고 이하 ‘국가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피해자의 유형 중 행안부가 제시한 3호에 ‘제1호의 안전사고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 사고는 SNS라든지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되거든요. 그것 본 사람은 목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다 그렇잖아요. 사고 나면 즉시 투입돼 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목격이 직접 목격한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로 보는 것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격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행안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해서 목격자들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사람 전체가 목격자고 피해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포괄위임이 아니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을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처음에 아마 이태원 참사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설사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을 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조항의 앞에 보시면 목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정신적 피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수단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행안부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이 조항을 두는 취지가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현장 목격자로 전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목격자 중에서, 그리고 현장 목격자도 현장에서 즉시 볼 수도 있고 1m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2m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현장 목격자로 하고 행안부장관이 디테일한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상을 먼저 우리가 명확히, 현장 목격자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주호영 위원** 이거를 여기서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사고 있을 때마다 이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 안 시켜 달라로 또 시위 같은 게 있고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급적 기준을 명확히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어차피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이 법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현장에서’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전제, 제한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도 이것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명확하게 해야지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만들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일단 먼저 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을 만들기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를 목격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안부장관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최소한 직접 목격이나 아니냐 정도는 법에서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부남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직접’이란 용어를 넣든지 해서……

○양부남 위원 현장.

○박정현 위원 ‘현장에서 직접’ 뭐 이렇게……

○주호영 위원 그 정도는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어떻습니까, 정부?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이 논의가 어쨌든 현장에 구조활동으로 나가지는…… 그러니까 이 목격자라고 하는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영상이라거나 등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공직자들도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일괄적으로 어디까지가 범위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가 될지는 저희들이 봐야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있었느냐를 증명하는 그런 절차를 엄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 정신적 피해와 그 원인과의 관계를 밝혀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인과관계가 없는 거에 집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혜인 위원 저도 그래서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여기서 문구에 ‘현장’을 넣는다고보다는 이후에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이 취지들을 반영하여 상세히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주호영 위원 제가 발언이 잦아서 죄송합니다만 포괄위임의 범위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무한 확장되는 것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고 하나 나면……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사실 경험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손해배상을 할 정도냐 아니냐의 정도지, 큰 사고 보면 정신적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 그래서 그 범위를 여기서 좀 더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신적 피해 없는 사람 없어요. 큰 사고 나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국민도 다 정신적 피해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보상할 피해 정도는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날 때마다 전 국민에게 다 보상해 줄 거예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하면 그거 맞지 않다고 하는 국민의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께서서는 위임을 하더라도 포괄위임을 최소한으로……

○주호영 위원 최소한 현장 정도라도, 법이 완벽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시작하는 거니까 최소한 정도의 명확성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양부남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로부터 트라우마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것이 무한정 확대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최소한의 미니멈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

또 사람이라는 게 현장에서 목격한 거하고 영상을 통해서 느끼는 거하고는 한 다리 떨

어지면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법의 원래 취지도 이런 안전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 목격자라는 미니멈 기준을 두는 게 이 법의 취지에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본부장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법에서 목격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부분으로 한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님하고 정부 측에서 이 문구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 피해자 뒤쪽에 ‘다만 목격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로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합시다, 그런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 조항이 제법 중요한 조항일 수 있어서……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국회 전문위원의 수정안 그대로 따르겠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안전권)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신속·적절하게 구조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또 16개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안전권을 도입하려는 취지인데요. 안전권의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헌법과 유사 기본법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권리 주체를 ‘모든 사람’에서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단서를 신설해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도로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안 제5조(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회적 참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반적인 기본법에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제정안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16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각 호를 통해 열거하고 있는데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규정 여부 및 문구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대로 제정안에서 3호, 5호, 10호, 11호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와 있었고요.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3호를 삭제하고 5호를 삭제하고 10호의 경우에는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참여를 요구할 권리’로 변경하고 다음 페이지

지의 11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조항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일단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기보다는 저는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안전권의 측면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정권이나 문화, 환경, 학습권 이런 거랑 다르게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생명활동에 관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법례와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입법례에서도 여성폭력방지법이나 물관리기본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선언적 조항들에서는 ‘모든 사람’을 적은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폭력이라고 했을 때 국민인 여성들에 대한 폭력만 우리가 보호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에도 ‘모든 사람’을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5조의 5호 관련해서는 이게 수색을 할 권리가 아니라 수색을 요구할 권리 수준이어서 저는 이 정도는 살려 놓고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색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권리로서 수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법에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저도 ‘모든 사람’으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고가 나서 섞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만 이 법의 적용을 하고 외국인은 방치하는 것은 안전이라든지 문화 국가 수준 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이런 데 비추어서 좀 맞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관광객까지도 포함해야 되는지, 체류하는 근로자 정도, 외국인도 체류하는 지위가 다 다를 텐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지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이 같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고 뻔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으로 바꾸기보다는 외국인에게도 하되 범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언적 규정이나 아니면 실체적으로 어떤 정부나 자치단체의 의무를 유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으로 하면 좋겠지만 ‘국민’으로 하고, 2항에 보시면 대안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뒤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안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5번 관련해서 이게 요구할 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구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만 소방이나 해경 등에서는 다른 수색,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좀 지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큰 피해가 났을 때 요구를 하시면 우리 권리 아니냐,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좀 어렵다는 것이 소방 등의 의견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양부남 위원 모든 ‘사람’으로 할 것인가 ‘국민’으로 할 것인가에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하루 다녀간 사람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고로부터.

그래서 저건 그것까지 뛰어넘어서, 저는 그냥 문맥 그대로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1시간 있다가 온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에서 외국인이 구경 왔다가 다쳤다 이런 경우도 안전권을 보호해 주는 게 문화국가의 위상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아주 합리적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색, 구조 요청도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조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청에서는 자기들 업무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면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그냥 두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안대로.

○소위원장 서범수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궁금한 걸 여쭙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양부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BTS 공연 보러 온 외국인들이 잔뜩 있는 공연장에서 재난이 났을 때 외국인은 왼쪽으로, 내국인은 오른쪽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주호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권리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저 앞에 있는 자리는 불안해 보이는데, 내 권리인데 저 자리 안전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거나 바르게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빠시는 건지, 이게 권리로 안전권이 보장되었을 때 내국인 외에 외국인들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으려고 하시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헌법에서도 우리나라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권리를 가진다. 이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법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피해자의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외국인을 차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태원에서도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권리가 됐을 때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납득을 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지금 이 법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도 뒤에 나오는 피해자 아니면 재난 약자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권리로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지금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호혜·평등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준다거나 우리 국민에게 해 준다고 했을 때 상호적으로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헌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국민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외국 사례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자국민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또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저도 보면 이 안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주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주호영 위원 그런 정도라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법을 만들면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다시 또 그걸 둘러싼 시비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모든 사람은’에서 ‘국민’을 기본으로 하고, 재난안전본부장이 이야기하듯이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국민을 원칙적으로 상대로 하는 거로 하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가 법상 차이가 없다면 어느 쪽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만, 수정안에 보면 ‘그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로 수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구할 권리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니까,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거는 보시면 원래는 ‘참여할 권리’ 이렇게 돼 있던 조문을 저희가 ‘참여를 요구할 권리’로 조금 완화시킨 것이……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참여할 권리와 참여를 요구할 권리와 명확하게 차이가 있나요? 참여를 요구했으면 이 법률상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정부에서 거기에 응해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지금 바뀐 취지는…… 사실은 참여를 요구하시더라도 상황 등에 따라서 참여를 시켜도 참여의 정도를 제한한다거나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또 참여를 못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부나 아니면 조사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참여할 권리와 참여를 요구할 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할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권이 있는 겁니다. 참여를 요구할 권리라는 것은 참여권이 없어요. 요구할 권리가기 때문에 불허하면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거 외에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5조 3호에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삭제해 놔는데 이거 피해자가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삭제했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거는 그 옆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일반인이라는 게 누구냐,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양부남 위원** 그러면 취재로부터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것은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언론은 재난보도 준칙 등을 통해서 자율규제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피해자들이 언론의 취재로부터 제2차, 3차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혜인 위원님, 입법 발의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나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런 취지 아닌가요?

○**용혜인 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넣은 거긴 한데요. 정부랑 논의할 때에는 2호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로 좀 같이, 이렇게 포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2호로요?

○**용혜인 위원** 예.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주장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참여할 권리와 참여를 요구할 권리는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데요.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받아들이는……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주호영 위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다른 제도에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항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빠져 있으면,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기관은 얼마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요구만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마음대로 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 되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여기 권리에 보시면 물품을 인계받을 권리,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개별 조항별로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지 그런 조항을 하나 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혜인 위원** 동의합니다.

○**양부남 위원** 피해자 권리조항에다가 국가든 기관의 의무조항을 종합적으로 하나 넣는 것, 그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성안을 하셔서……

○소위원장 서범수 예, 만드세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왜 제가 아까 조사를 요구할 권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사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 하는 이유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피해자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조금 왜곡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여쭙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무조항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조사 참여라는 것도 직접 조사하는 사람처럼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참여가 있을 수 있고 조사하는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정도 가지고도 참여라고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많이 문제 될 겁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요, 이 조항이. 그 대신에 피해자 모르게 조사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모니터하겠다는 정도 아니겠냐 싶은데 그것도 나중에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 쪽에서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조사를 해 보면 유가족 분들께서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요. 참여하실 때 저희들이 해 보면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싶으시다거나 진행 과정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거나 또 그 논의되는 과정을 들어 보시면 오히려 ‘아, 이게 밑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되는구나’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시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회의에 참석하신다든지 현장에 가 보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조사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분들을 참여 못 하시게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건지 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다면 우선 핵심이 조사 참여가 참관만을 말하는 것이냐, 주도적인 조사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해야 하고요. 참여가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 아니냐 할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여의 숫자라든지 참여의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범에 근거를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기관이 알아서 몇 명 하겠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권리까지 됐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참여 인원,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건 있을 때마다 다른 시비들이 자꾸 생긴다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아까 여기에 답해야 된다는 조항에다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할 때 그런 부분 같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저희가 법을 논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있는 법의 내용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정부에서 주장할 수 있고 우리들이 잘할 수 있다, 참여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요구할 권리 정도로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 법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 때도 보면 어떻게 1년이 됐는데 반경 200~300m 안에서 피해자의 유품도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니까, 유골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라가 뭘 하는 거냐는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적재해 놓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더미라고 한 것을 열어 보니 소중한 가족들의 유품, 유물부터 시작해서 유골까지 나오고 있는 행정부의 이 안이한 태도가 법안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만들게, 즉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법적으로 좀 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항변을 하시지만, 그 항변에 저희도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나라고 동의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번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가 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있으면 뭔가 좀 더 이루어지고, 없으면 그냥 대강 해서 넘어가게 되니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내가 가서 직접 다 봐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불비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피해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혹시 오해하시게 잘못 답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다만 이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참여할 권리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런 게 없어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여객기 참사 때 안 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지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밝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동어 반복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 의견은 참여를 요구할 권리, 수정안대로 하고 거기에 우리가 논한 대로 종합적인 의무조항을 넣는다. 그런데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의 형식이 뭐냐, 참여의 정도가 뭐냐, 이런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하려면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참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접 조

사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피해자들이 참여를 요구할 때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참관을 한다든지 그 참여 요구하는 내용에 이런 구체적인 게 포함이 될 것이고, 국가든 기관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결론을 내 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법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어떤 의미고 몇 명이 하고 방식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너무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주고 거기에서 승낙하는, 국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옹혜인 위원 이 법안을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들과 논의하고 할 때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조사관으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취지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만 조사 진행 과정이나 절차 혹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들이 필요한 거지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유해수습 과정에 참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항 내에 큰 가방 안에 약간 쓰레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었던 부분을 조사하고 수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접수되지 않고 그냥 1년 가까이 방치가 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호영 위원 발의한 사람이 그런 취지라면 아예 조문의 취지를 그렇게 바꾸어서 조사에 관한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그러면 아예 깔끔해지는 거지요, 복잡하게 무슨 시행령 고민하지 않고. 그런 취지라면 ‘이런 것 조사해 주십시오’ 하면 조사한다 못 한다,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못 하면 못 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차라리 그래 버리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입법 형식 자체가.

○옹혜인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고 권리에 대한 선언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기보다는 권리에 대한……

○주호영 위원 그러면 조사 참여 요구권이 아니라 의견개진권으로 바꾸는 게 안 맞나 이거예요, 제 말씀은.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가 좀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피해자나 국민들께서 인식을 달리하실 거라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방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을 개진하는 권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는지 그렇게 해 버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조사를 요구할 권리로 살려 놓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 물론 조사할 권리와 조사를 요구할 권리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여할 권리에서 참여를 요구할 권리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발의된 법안은 참여할 권리였었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조사를 요구할 권리.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조사를 요구하고 참여할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과하기 때문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로 완화했고 모든 것을 법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실래요?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준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조항을 나중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서는 답을 해 줘야 된다 이 정도를 주시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아까 국가 의무조항을 넣는 것으로 가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주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주호영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나중에 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심플하게 조사에 관한 의견개진권을 해 놓고 그 의견개진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넣으면 입법 의도는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래 놓으면 이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딴 시빗거리가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 좀 조사해 봐 달라, 이것 해 달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의견을 정식으로 개진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의무를 두면 입법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저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저희 대전 문평동에 화재가 나서 14명이 사망한 사고가 났는데 그 유가족들이 화재 현장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현장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유족들이나 관계자들의 조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거고.

이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법에 원칙을 달아 놔도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조사 요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다 답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은 담고 나중에 구체화했을 때 그것은 행안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생각……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참여를 요구할 권리 정도로 돼 있으면 특별히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 의무조항을 넣자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거여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등장한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는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과거의 사례들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성안을 할 때는 참여할 권리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정도를 넣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좀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부남 위원**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의무조항으로 두고……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참여를 요구할 권리는 그대로 살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의무조항을 첨부하는 걸로……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어떻게 해도 좋아요. 좋은데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 안을 낸 거예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문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일단 4조는 수정의견대로 반영을 하고, 3호·5호·11호……

○**옹혜인 위원** 5호 관련해서도 저도 아까 의견 드렸고 양부남 위원도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정리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거는 그대로 삭제하는 걸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부 측은……

○**박정현 위원** 그거를 삭제하는 게 범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실제로 저희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생존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지금도 요구를 받아서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현상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권리로 댔을 때 이게 부담이 되고 무리한 수색이나 이런 걸로 또 소방관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5호는 10호의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여기에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조사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 수색을 좀 해 달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넓게 보시면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요. 다만 이거는 구조 과정,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하고 조사 과정은 끝난 이후니까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거는 넘어갑시다.

○옹혜인 위원 저는 다시 한번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수색을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색을 요구할 권리 정도로 피해자의 권리를 좀 명시해 놓자라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기록을 하는 의미에서 옹혜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옹혜인 위원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3호·5호·11호를 삭제하고 10호의 경우에는 참여를 요구할 권리로 남기고, 대신 여기에 국가가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항을 추가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6조에 보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국가가 성실하게 응답해야 되는 의무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10호에 붙여서 그렇게 특별히 더 규정을, 문구를 넣자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권리조항이잖아요. 이게 지금 권리조항이라서 법체계에……

○전문위원 나아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10호에 붙여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가등의 책무·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조에서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법령 등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시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수립 및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안전사고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내용들을 국가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 7조에서는 기업 및 단체의 책무로써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정책에 협력할 책무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책무 그리고 사고 발생현장의 훼손을 금지하고 안전사고의 원인 등 조사 방해를 금지하는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규정들이 실효성…… 6조는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고요. 7조와 관련해서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유사입법례 등을 참조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그 규정을 위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의를 두거나 시행령에 위임해서 책무를 부담할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국가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안전권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국민’으로 변경했고 또 7항에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훈련 실시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문을 조정했습니다. 7조에서는 ‘기업 및 단체’를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했고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 등’ 하면 ‘등’은 뭘 말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상법상의 회사들 중에서 소규모,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이라든지 공사·공단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건 만들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여기의 ‘기업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겠지요.

○양부남 위원 기업이 아니면 책임이 없는 거…… 여기 시행령에 해당되는 그런 법상 기업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이러한 안전사고를 유발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박정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양부남 위원 머리에 확 안 떠오르네요.

○박정현 위원 대개 공사·공단·기업이 들어가면 사고 유발자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용혜인 위원 ‘기업 등’은 또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기로 했으니까요.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기업 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속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직자 퇴직금지 3년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인사혁신처가 리스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3년 동안 취업을 못 하고 안 들어가면 취업할 수 있고, 그게 뭐랄까요 현장에서는 저희 의도와 다르게 굉장히 뭔가 선을 가르고 규제적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을 기업이나 단체 누구든 이런 책무를 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 들어가면 이게 법정신으로 저는 맞을 것 같고, 이 책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적용에 대해서 판단과 소송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기업 등’이라는…… 어디는 책무를 해야 되고 어디는 책무를 안 해야 되고 이게 잘 추론이 안 되네요.

이것 어떻게 정하지요? 그러면 규모로 정하나, 매출액으로 정하나, 고용인 수로 정하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 단체든 생명안전에 대한 의무는 해야 된다 하는 상징성, 선언 조항으로 끝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에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조항이 책무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선언적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실질적인 의무라든지 책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는 단체라는 것도 의미가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단체를 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거냐, 어떤 걸 기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관련 법률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법 172조에 따르면 법인 등기를 한 것 중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불명확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혼란이나 논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성희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단체라고 하면 교회 혹은 종교기관 이런 데는 기업에는 안 들어가고 단체에는 들어가는 데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러니까 지금 단체를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용어를 갖다 쓰면 다른 법률에서도 단체를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될지 사법상의 재단법인이 될지 비영리법인이 될지 아니면 동창회가 될지 이런 것에서 단체를 뭐로 볼 것이냐, 너무 불명확해서 ‘단체라는 것은 그래서 법에서도 아예 좀 삭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건물에서의 안전이나 혹은 단체로 어디 갈 때 안전이나,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체를 넣으면 여기에 포함은 되지만 규정이 불명확해서 모든 걸 다 단체로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되는 기업만 넣자는 취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일단 책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본부장님, 그래서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업 등이나 아니냐로 구분할 거냐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상에 법인 등기한 회사 중에서 소상공인들을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공운법상의 국가공기업 이 정도로 일단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저는 그냥 이거는 기업 등이 해야 되는 선언조항으로 들어가면 되

지, 행안부가 앞서서 이거는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정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생명안전의 기본 취지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뒤쪽에 보시면 안전사고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거기에 또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선언적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가 보면 안전사고의 정보 제공 등에 기업이라는 범위들이, 또 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기업이나 이거를, 지금 이 법에서도 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정보 제공이나 그런 거는 작은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는 하기 어려우니까 범위를 특정한다 그건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를 이 조항까지 포함해서 할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고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기본 취지에 대해서 이거를 행안부가 앞서 가지고 어디는 생명안전의 책무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면 정보 제공이나 구체적인 것에서는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작위적으로 하게 되면 동창회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특정하는 거는 그 조항에서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까 단체는 뺀다고 한 거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용혜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업의 책무만 규정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박수민 위원** 저는 이 조항이 근원적으로 생명안전의 책무를 누구나 신경 써야 하는 상징적 선언조항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행안부가 리스트업한다는 게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실 부담이 있는 책무에 대해서 대상을 사이즈나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제한한다?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넣을지 아니면……

○**양부남 위원** 이것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단체를 뺀 이유는 없지요.

○**박수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언적 의미라서.

○**용혜인 위원** 원안에는 단체를 넣기는 했는데요. 그 단체가 좀 불명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받아서 오히려 뺀 거기는 하거든요. 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낸 비영리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없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지는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법안의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무슨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이런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요?

○**박수민 위원** 주최 측 단체가 져야지요.

○**양부남 위원** 당연히 주최 측이 지는 것하고 이게 만약 단체도 하는 것으로 책무를 졌을 때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혜인 위원님? 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옹혜인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기업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기업 내에서의 범위를 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단체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맞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분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기업의 범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안에 있던 단체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 기업 등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걸 행안부에서 정할 수 있나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뒤에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별도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그 뒤의 조항을 같이 놓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법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다른 입법례라든지 실제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 요구했을 때 제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에다가, 이 행안위에다가 대통령령 제정 과정을 한번 보고드리면서 상의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어떻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는 그러면 이 4항을 뒤쪽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둘 거면 이 법 몇 조, 몇 조 등에 의한 책무를 수행하는 기업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줘야 그나마 법이 법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뒤에도 기업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법 제17조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에 보시면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 이렇게 해서 ‘기업·단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여기 17조에서 말하는 기업·단체와 여기의 기업·단체는 같은 의미로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같은 법이기 때문에 같은 범위로, 같은 용어로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것을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에 만들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아까 정의 처음에 기업·단체 나오니까 거기서 정의를 해 주면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기업 등에 가셔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하는 것이……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강한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다 전달됐을 것으

로 보입니다.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모든 단체가 다 이것을 실행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책무조항 여기에 넣어서 전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제 얘기대로 부분적으로 할지 그것은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저도……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버리면 뒤에 17조에 나오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웅 예, 그렇습니다.

거기예다가 ‘이하 기업 등’ 이렇게 해 주면 더 명확할 것이고 다만 뒤에 가서 정하면 그러면 앞것은 뒤에서 하는 것과 다른 거냐…… 그러면 다르다고 해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것도 해석의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가능하면 앞에서 정해 주시고 뒤에까지 일관되게 가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국가등의 책무’에 대응하는 ‘국민의 책무’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 그런 정도도 검토를 했었는데 기업 및 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부과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걸로 보였고 또 17조에서 실질적인 어떤 책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명안전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9조(생명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안전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대통령 소속으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심의 대상을 생명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안전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권 증진, 피해자 권리의 보장,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등 주요 안전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위원회의 명칭, 구성 등에 대한 심사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생명안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명칭을 하고 있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나서 5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구성이 총 40인으로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부위원장 2명(행정안전부장관 1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정부위원 18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2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 안전을 재난안전관리법과 비교…… 재난안전관리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생명안전정책위원회가 더 포괄적이고 안전과 관련된 더 상위적인 계획이나 대상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조정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법을 조정해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20페이지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참고해서 조항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해서 생명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1호에는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호에서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와 4호는 동일한 내용이고 5호 같은 경우에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대신에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을 하였고, 6호는 동일하고 7호에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였고 앞에 국가의 책무에도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호에서는 ‘그 밖에 안전권 증진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항에서는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자문기관이에요 아니면 의결기관입니까? 성격이 뭡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여기서는 자문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자문기관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요? 임기조항은 없어요, 법에? 그냥 임명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닙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이 법안에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나

와 있지 않은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금 하고……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런 임기 같은 것은 법률안에 넣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격상해서 입법예고하고 뭐 하겠다며요? 뭐에 근거해서 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훈령으로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모법이 어디 있어요, 모법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것은 위원회만 구성하는 거라서 별도로 그냥 시행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지요. 거꾸로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게. 거꾸로 아니에요? 이것 법 통과될 거야. 통과되기 전에 우리 이것 법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회를 뭘로 본다고요, 지금? 모법 없어도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것?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국민생명안전기본법 안에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왜 벌써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일을 해요? 왜 이래요, 이것?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것은 위원회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위원회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간에 추진 내용에 생명안전기본법안의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격상해서 운영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법도 통과가 안 되고 이제 심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위원회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 심의는 별문제 없지. 이것은 관계없어. 심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들어서 갈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법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뜻이지요, 지금 이것은.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오니까, 이것은?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는 그 명칭은, 위원회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요. 대통령령은 법이 있어야 대통령령으로 하잖아요. 대통령령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드느냐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위원회만 신설하기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 위원회는 어디서 나온 명칭이에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명칭이에요, 그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꼭 법

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 안에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이 법도 지금 심의도 안 하고 심의하는 과정인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벌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예고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는 법에 꼭 위임이 있어야……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어디서 나온 용어나고요. 제일 먼저 나온 용어가 어디서 나온 용어나고요, 그게? 이 법에 의해서 나온 용어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요. 그런데 이 법도 지금 이제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법이. 모법도 없이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기관을 만들려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왜 지금 심의하는데? 절차가 안 맞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들을 설치하는 것은 꼭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법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적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설치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위원회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 생명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대통령령을 먼저 진행하고 이제 법을 만드네요? 그렇지요? 대통령령 먼저 만들고 난 뒤에 법을 만드네? 그렇잖아요.

아니, 본부장님 이야기한 것 내가 이해는 해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라는 게 다른 데서 차용돼 온 게 아니고 지금 생명안전기본법 안에 있는 위원회를 차용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유사한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그러면 이게 법이잖아. 모법이잖아요. 법 없이 대통령령……

몰라요. 완전히 개별화돼서 법하고 관계없는 위원회 같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엄연히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심의도 안 하고 법도 통과 안 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는 이것 할 거야’ 이거잖아, 지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

○소위원장 서범수 왜 자꾸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는 하는데 요.

그다음에 임기는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기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전문위원 나아정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2년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어디 돼 있어요, 법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법에는 없고 시행령……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러니까 법에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법에 안 들어가요? 보통 어느 법이든지 간에, 특히 이것은 지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예요. 그런데 그 위원들의 임기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저희가 이 법은 정부안으로 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임기를 여기에다가 명시해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임기는 명시하세요.

얼마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2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임기를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것은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국회를 무시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

○박수민 위원 정부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재난안전기본법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양쪽을 놓고서 행안부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 이어서 전 지자체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돼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하건대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목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재난안전기본법과 혼선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다운그레이드 된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2개 업무 비슷한 것을 해서 역량이 분산된다 이것도 안 될 겁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업무 역량 분산과 다운그레이드는 피하고 업그레이드는 가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기본계획과 위원회에서부터 운영을 해서 그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따가 나중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들, 일부 중복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뒤에 가서 심사보고서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삭제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발전시킨 조항을 이 생명안전기본법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사한 제도 2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를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 뒤에 가서 계획 같은 것들을 보시면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원화한다든지 지방이나 다른 부처의 부담을 줄이면서 또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안 심사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 남길 겸해서, 하여튼 이 기본계획 비슷한 것 지자체에서 2개 만드느라고 시간 보내고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일원화해서 지금 하나만 만들도록 이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 법에 의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하고 재난안전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명히 이것은 구별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역할 분담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이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이 법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9조 같은 경우에는 임기조항을 포함해서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10조에서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립 주체를 정부로,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포함시켜야 될 사항으로 안전권 보장 목표와 방향,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정비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안전권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조사,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립된 안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여 이 계획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2조에서는 국가등은 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재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계획 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집행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정안의 생명안전종합계획 역시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유사한 성격과 목적의 계획 추가 수립에 따른 중복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재난·안전 관련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설정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하위계획인 시행계획은 제정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재난안전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련된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5페이지의 참고를 보시면, 생명안전종합계획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돼 있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집행계획 그리고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체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놓고 그 밑에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방안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생명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구를 명확화하는 정도만 개정을 했고요.

4항을 보시면 여기에서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4항을 따로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이 계획의 시행계획을 삭제하는 대신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명안전종합계획과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서 계획들의 일관성을 부여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옹혜인 위원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것은 재난안전법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체적인 생명안전종합계획은 생명안전기본법에서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의미의 어떤 그것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는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안전영향 분석평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국가등이 안전관련기준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법령의 제·개정 및 국가등이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 또 국가등이 추진하는 일정한 사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등에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요.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과의 관계에서 정리할 부분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난안전법의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그래서 삭제하고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제정안에서 안전관련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의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재난안전법 제3조제4호의2에도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재난안전법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 삭제해서 이 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와의 관계에서 제정안의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재난안전관리법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제정안의 하위법령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0을 삭제하고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이라는 제정안 제14조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15조와 관련해서는 분석·평가의 수행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다른 영향 분석·평가 제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아서 문구 조정을 조금 하였습니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 등을 거친 경우에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여 유사·중복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전 관련 영향분석평가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법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한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계획이나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안부, 기

후부, 국토부 등에서 별도의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존의 평가를 거치도록 그렇게 법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형식에 있어서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서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와 관련해서 위임 규정을 만들었고요. 또 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법과 통합하면서 문구를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영향 분석·평가와 관련해서 ‘국가등’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였고, 국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에서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추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위임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희가 원래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형사사법 정보랑 구급 정보 등을 지리 정보랑 결합해서 취약지를 파악하는 실효적 조향을 논의했었잖아요. 그게 빠지게 된 경위가 뭔가요?

여기 원안 말고 저희가 정부 측이랑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1월 27일 기준으로 논의했을 때 실효적인 조향을 넣는 안을 받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그것 제가 확인하고 조금 뒤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논의해 보니까 재난안전법 이걸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네요?

○전문위원 나아정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일단 타법 개정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쪽에서도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법에 완전히 충돌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차츰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충돌하는 사항은 아니냐? 그래도 이 법을 시행할 때까지는 고쳐져야 될 거잖아요. 아닌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전문위원 나아정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알기로는 이 법에서 부칙조항으로 재난

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타법 개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 문제라든지 안전지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개정을 하기는 해야 될 거잖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아닙니다. 타법 개정으로 바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도 비슷한 걱정인데 기본 취지는 다 좋습니다. 13조서부터 다시 보면 기준 그다음에 진단, 지수 개발하고 영향 분석·평가하고, 개념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다 개념적이라서 현장에서는 대단히 또 혼란되고 또 일이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현장 집행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일단 기본 당부를 좀 남기고.

영향평가 이것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재난법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15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비포·애프터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을 만들 때 정부 내에서는 성별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하나 평가 대상이 되고 있고요. 자치단체 조례까지가 안전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을 만들 때 이제는 안전 영향평가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법령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재해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거쳐서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재해 영향평가 하고 안전 영향평가 한 번 더 하고, 이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 조항을 보시면, 35쪽 15조 2항을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항이 거기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재해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영향평가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일단 제도 자체가 안전 영향평가가 재해 영향평가 외의 별개의 제도로 신설되는 것은 맞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기존의 재해 영향평가까지 다 한 단계에서 안전 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한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 조항을 보시면, 2항을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을 심사하고 하지만 현장에 가면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법이 설정이 되면 법에 책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일을 하게 되고, 안전이 이중·삼중으로 안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부담만 늘어나고 안전은 또 뚫리고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논해 봐야 여기서 어떤 결론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은 머릿속에서 설명하지만 저 설명을 듣고서 현장의 지자체에서 주무관서부터 다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개념 정리가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전하기 위해서는 재해 영향평가 하고 안전 영향평가 해라, 두 개 다 내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 제도를 뺄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 없게 행안부가 최선을 다해라라는 당부 정도 남기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 제도들을 거치고 있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로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제도가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이중·삼중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중·삼중이어야 되지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이중·삼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심플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 잘못하면 자치단체, 밑의 지역에 내려가면 엄청나게 절차 자체가 번거롭게 될 수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에 의한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순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현재도 있는데 법에 넣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논의는 했었고 내용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행안부에서도 법률 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령 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아까 대통령령 정할 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저는 행안부에서도 이게 법률 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게 정보자료 고도화하는 실효적 대책에 빠진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 3항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이 해당 근거가 시행령에 반드시 내용으로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개정안 마련도 검토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과에 대해서는 시행령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잊지 말고 국회에 와서 의원실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앞의 수정의견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36페이지입니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자구와 관련해서 그냥 국가등이 배·보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의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로 수정하고, 또 17조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 제목에서 ‘공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일단 3항에서는 법제적인 정리를 한 거고 4항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금 완화했고, 17조에서는 ‘공개’를 삭제하고 ‘기업·단체’를 앞에서 논의하셨던 대로 단체를 삭제하고 ‘기업’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양부남 위원** 예, 하세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2시에 뵙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안 제18조부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39페이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안 제1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국가등이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고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요.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는 내용, 정책개선 권고, 권고안 이행 점검 등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조사 주체는 독립조사기구를 상정해서 예산 및 인사상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국가등은 독립조사기구의 조사 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독립조사기구의 조직, 구성, 조사의 대상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재난·사고조사 방식이 재난의 경우에 재난안전법상 재난원인조사,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25개 조사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정안과 같이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재난·사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사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서 단일 조사기구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한다면 다른 25개 조사기구를 통폐합하여 독립조사기구로 일원화할 것인지 각자 병렬적으로 존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하고요. 참고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수 국가들이 재난·사고 유형별로 조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웨덴·핀란드와 같이 모든 재난·사고에 대해 단일 기구에서 통합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입법공청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독립조사기구를 통한 전문적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독립조사기구 설치 형태로 상설기구가 더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또 독립조사기구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 이행점검·관리를 위해 독립조사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립조사기구의 가동 요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포함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른 다양한 개별 조사기구와 제정안의 독립조사기구 간의 지위·권한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객관적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독립조사기구의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현행 법령에 따른 다양한 개별 조사기구와 제정안의 독립조사기구 간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정안의 독립조사기구와 개별 조사기구들 간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있으셨고요. 개별 조사기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제정안의 독립조

사가구가 개별 조사기구의 조사와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42, 43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국가 재난·사고 조사기구에 개별 법령에 따른 독립조사기구들이 25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조사기구들에 서의 부처 의견들이 와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별 법령에 따라 사고조사 중인 사항은 제외하는 등의 단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 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사·심판의 전문성, 심급체계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통상부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별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 등 사고조사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 또는 사고조사 결과를 인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또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복수의 사고조사 활동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 산업재해수사과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을 감안해서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양쪽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두 조사 체계 간 관계 및 역할 구분, 조사 결과의 효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40페이지의 내용으로 오시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만약에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모든 내용을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행 재난사고 조사 방식을 고려한 25개 개별 조사기구와의 관계 설정, 조사 수행 요건, 조사기구의 소속 등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한 대안을 행정안전부가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와서 여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칭이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며, 설치 형태는 행정위원회로서 상설 행정위원회고 25개의 개별 조사기구를 존치하면서 병렬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인명·재산 피해 정도가 크거나 영향이 광범위한 안전사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로 조사를 요구한 안전사고 또 위원회 의결로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상임위원 3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 조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사단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사무 처리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지원조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8조 1항의 경우에는 제정안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구만 조금 고친 내용이고요. 2항의 경우에도 자구를 조금 수정을 하

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는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사고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큰 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사고 등을 정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안전사고 그리고 1호·2호 외에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항을 보시면 조사위원회의 조사업무 방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항은 3항에서 독립조사기구의 예산·인사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부분에서 직무 수행의 독립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체를 하는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항에서 정책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에 덧붙여서 조사위원회에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정안 18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7항으로 그 조문을 다듬어서 지금 신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19조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2항에서 임명 및 위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격이나 결격사유 부분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위원회의 예를 참조하여서 지금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6항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7항에서는 지원조직을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8항에서는 위임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행안부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 잘 써져 있네요,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독립조사기구와 기존의 조사기관의 영역 이런 걸 저는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 행안부 안은 조사기구와 그다음에 기존 안을 병렬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렬적으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사고조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사고조사위원회 산하로 기존의 조직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병렬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십니

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존의 25개 조사위원회들은 그 개별법에 근거해서 존치를 하고 이 위원회가 별도로 설립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업무 영역을 어떻게 하나 이것이지, 그렇게 되면 조사 업무를, 조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병렬적으로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기존의 기구도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독립기구도 둔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기존의 기구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 새로운 기구에서 조사를 합니까? 두 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구가 지시를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조사기구의 조사 대상이 아닌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사기구들이 조사하는 내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새로 생기는 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 조사기구와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면 이쪽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관련되는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법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조사기구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존 조사기구에서 한다는 원칙이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런데 규모가 크거나 상임위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로 넘어온다.

○**양부남 위원** 원칙적으로는 기존 조사기구에서 하고 거기에 규모가 크다거나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거나 특수한 사항이 되면 독립기구에서 하고?

○**옹혜인 위원** 예, 맞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과정 속에서 정치적 개입이 늘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어떤 행정적 비용들은 좀 최소화해 나가면서도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수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18조 3항의 3호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어쨌든 1호, 2호를 제외하고 3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서조항인 거지요?

그러니까 검토보고 비고란 설명에 따르면 이미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조사위에서 의결로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호에 대해서만,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만 제외한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1호, 2호의 건에서도 조사위원회가 의결로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3항 3호의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항 3호에 대한 단서라고 저희들 해석하고 있고요. 3항 1·2호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는 단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단서조항이 좀 불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건데 기존의 기술적 영역이나 국한된 관점 등에서 조사기구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재난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 것이고 일정 부분 중복 조사의 순기능까지도 염두를 한 보완적 설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존의 조사기구 등에서 부처의 이견이 많다는 건데 저는 이런 규제적 측면만 주목해서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차피 1호와 2호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3호의 단서조항은 좀 불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옹혜인 위원** 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보셨지만 아까 개별 조사기구를 운영하는 부처들이라든지 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조사 결과가 번복된다든지 본인들의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한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그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다만 엄청난 게 아니라면 그 위원회와 중복대로 조사하는 것을 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의 반대도 좀 하고……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맞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조사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1호, 2호라고 하는 제한적인 조항을 뒀기 때문에 굳이 3호에 ‘다만’이라는 형태로 단서조항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 겁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3호는 1호, 2호 말고 다른 조사를 할 때는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1호, 2호와 같이 그런 큰 거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한 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조사를 하고 싶을 때 한다고 할 때는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조항이……

○**옹혜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가 재난 유형이 없었던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래서 행안부가 당시에 기존의 재난 유형이 없어서 못 했더라는 건데 만약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재난 유형이 없으면 사실은 그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 조사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런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호에 해당이 돼서 1호의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큰 조사기 때문에 3호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1호에 적용……

○**옹혜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면 사실은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 이유가 잘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소규모의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재난 유형이 없을 경우에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이 조사를 먼저 시작해 버리면 이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조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 25개 조사기구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 25개의 조사기구에서 조사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옹혜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행안부에서 걱정하는 일도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게 3호로 의결해서 자기들이 하는 걸 다 할 것처럼 열려 있다고 생각을……

3호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나면 해수부 해양심판원에서 3호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의결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어찌 됐든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 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의결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고유 영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영역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준다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여기 18조 2항, 3항, 3항 중 3호에서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라고 했는데 1항에 따른 조사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닌가요? 18조 1항의 조사는 어떤 조사인가요? 18조 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어떤 조사를 말씀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그 18조 1항은 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사고조사 전체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이 범조항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혼돈이 오잖아요. 이 법이 생명안전기본법이고 18조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으로 ‘등’ 자는 들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18조 1항이라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전제로 한 것 같아서 문맥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1항에 따른 사고조사라는 것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아니고 기존의 독립기구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25개 조사기구에서의 조사.

○**양부남 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만약 이 표현이 1항에 따른……

○**양부남 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항을 해석해 보면, 18조 1항은 독립기구에서의 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의미하는 바는 ‘다른 조사기구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서범수 본부장님, 지금 이 조사위원회하고 25개 조사위원회하고 병렬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하게 큰 안전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둘,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주요한 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문제는 큰 사고가 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일이지요? 큰 사고가 터졌으면 미리 행정부 간에 조율이 안 됩니까? 조율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할게’ 아니면 ‘이 건은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너희 해당 부처에서 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만약 벌어진 이후에 사건의 내용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모르겠습니다—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적 참사를 겪으면서 했던 것들은 기존의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조사기구가 생겨서 계속 조사를 하는 것들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큰 비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두고 어떤 큰 사회적 재난, 참사가 벌어졌을 때는 그쪽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소위원장 서범수 이 법이 만들어지면 효력은 소급효가 아니지요? 앞으로 나갈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급효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3호에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에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무안공항 참사의 경우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여기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부남 위원 이 조항대로 하면 못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한번 확인은 해 봐야지요.

○박정현 위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가 터졌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조사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너희 하던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당겨서 할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이다, 아니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사가 끝났다고 했을 때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제가 그래서 여쭙보는 게 뭐냐 하면 이 법 자체가 과거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처럼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면,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해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3호에 남겨 놓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아예 1·2·3호를 다 합쳐서 전체를 묶어 줘야 그런 문제가 예방이 안 되겠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과거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과거에 있었던 10년 전의 사건도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행안위에서 ‘다시 하자. 다시 해’라고 하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지요, 이 조항만으로 보면.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용혜인 위원 본부장님, 시행령 준비 중인 사항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3호의 ‘다만’ 조항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에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형식만 놓고 보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훨씬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광범위한 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좀……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법이 소급효가 있느냐 소급효가 없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행안위에서 우리가 10년 전의 어떤 큰 사고가 못마땅하니 다시 조사하자고 의결을 했을 때 조사위원회에서는 해야 되지요, 이 문구로만 보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원장 서범수 하잖아요. 3호에 1호, 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10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안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조사해’ 하면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 시점, 시기 문제인데 적용례나 뒤쪽에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분을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아니면 ‘언제 이후에 발생한 재난’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적용 시점이라든지 적용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쪽에다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과거 건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고 해 주시면 뒤에 시행 시기나 적용례 쪽에서 충분히……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 잘못하면 소급효가 있을 수가

있다, 소급 법률이 될 수 있다, 이게 만들어지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과거의 것도 끌어올 수 있는 소급효의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뒤에 적용례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옹혜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8조의 6항·7항 관련해서 저는 조항 자체는 필요한 조항이고 동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법과 조사위 신설을 통해서 재난조사라고 하는 게 전면적인 개편이 되려면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의 취지에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후에 조항을 정비하면서 이게 임의조항으로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5개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와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방안과 조치계획을 조사위가 점검·확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까지 못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조사위원회가 통보는 받도록 해서 통합적 정책 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임의조항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다른 조사기구보다 상위의, 아까 병렬적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조사기구의 독립성이라든지 다른 조사기구의 그런 것들 또 다른 관련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사기구들의 결정,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점검과 확인까지는 병렬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어렵 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통보는 받도록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등등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조사 각자 하고 끝 이렇게 돼 버리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지금 18조 5항 7호에……

○**옹혜인 위원** 6항, 7항.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6항, 7항 말씀하시는데 5항 7호에 보면 여기서 조사를 할 때 타 조사기구의 조사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이것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조사위원회 위원이 15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각 분야마다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전문성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만약에 사고가 나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면 그 밑에 또 다른 조사

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조사단을 꾸리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사고가 안 난 상황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조사단이라는 게 구성이 안 되잖아요, 조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항공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너희 조사한 게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 하면 그게 과연 여력이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조사기구가 만들어지고 조사기구의 위원들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뉘지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는 사무기구가 꾸려지는데 거기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들이 있어서, 각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전문위원을 구성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있고 또 조사라는 것이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조사에 대한 전문성,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이 분야도 조사를 하고 저 분야도 조사를 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조사에 대한 전문성도 저희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방금 5항 7호와 관련해서 조사기록이라든지 수사기록도 볼 수 있다는 취지인가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마음대로 봐 버리고 재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여기에는 타 조사기구의 조사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수사기록은 빠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재판기록은? 재판 중인 사건의 재판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 생각은 재판 중인 게 아니라, 재판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의 재판기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것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사기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기록도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이게 끝나 버린 조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사기록은 다른 기구에서 조사 중인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18조 3항 1·2·3호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그 조사가 우리가 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조사가 끝난 다음인지 아니면 또 병렬적으로 하는 부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중복적으로 하는 거라면 타 조사기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에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 의결로 지나간 것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조사기구에서 조사가 끝났던 조사기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끝난 기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 볼 수 있지요. 또 받아 봐야 되겠지요, 조사의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끝나 버리지 않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기록이라든지 재판기록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한다면 또 다른 조사기구의 독립성이라든지 재판의 독립성이 상당히 침해받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은 18조 3항의 3호 단서하고도 연동돼 있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재판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재판이 끝난 이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논의했던 18조 3항의 3호 단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부칙으로 넘어가서 하자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부칙으로?

○**소위원장 서범수** 예.

○**옹혜인 위원** 의견을 좀 드리면 이게 3호에 ‘다만’ 조항으로 들어간 것인데 저는 애초에 이 법의 취지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조사 대상을 그렇게 이 법 시행 이후로만 하는 것은 취지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 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한데요.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안전사고와 재난 등이 있었고 법 취지 실현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중대한 과거의 참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증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는 것이 저는 이 법 취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조사하고 조사가 이미 끝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3호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참사로 제한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이 법의 문안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사가 진행 중인 안전사고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사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대로 해석을 하면, 조사가 진행 중인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독립적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조사가 끝나 버리면 10년 전, 20년 전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안의 해석으로는……

○**옹혜인 위원** 저는 그런데 그게 필요하면 과거에 대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부남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두되, 그러한 옹 위원님이 우려하는 점은 없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살릴 것인지 여부가 나는……

○**소위원장 서범수** 이 조항하고 관계없이 제 의견은 옹혜인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를 우리가 봐야 되지, 물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과거에 오래된 사건도 억울하다고 요구를 하는 게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어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이.

그래서 법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소급효의 법률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만들기 때문에 좋다, 과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나는 이 법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이 법을 가지고 과거의 사고, 대충 정리 다 되고 수사 끝나고 한 상황을 또 억울하다,

물론 억울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양부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칙에 넣냐 여기에 넣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입법의 방향에 있어서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안전사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끝나 버린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결정된다면 부칙에 넣든, 여기에 넣든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우리가 결정됐냐 이것이지요. 방금……

○**용혜인 위원** 그래서 그게 꼭 3호 단서조항만으로도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사실 요구가 있다고 다 과거에 대한 사고를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가 발생했을 경우거나 이런 경우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 자체를 닫아줄 거냐에 있어서 최소한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사건을 다 꺼내서 조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법적인 결과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재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열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면 1호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2호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뭔가 그런 필요가 있다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성희 위원** 1호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사고에 과거 사건을 담을 생각이십니까, 행정부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는 큰 사고가 어떤 거다, 이것을 담으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든지 그런 걸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언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거꾸로 2번 같은 경우에 상임위 의결로 요구하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위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건,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걸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사건 한 20개 리스트 뽑아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는데 그거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의결하는 정도의 의제 같으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의 한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은 없고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거는 입법부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의결을 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제가 사건의 리스트

를 놓고 이걸 다 조사해 오라고 시킬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한두 건 정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제 눈에는 읽히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한정하는 걸 여기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간사님,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안전사고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그래서 뭔가 조사 결과를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 법원에서도 재심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안전사고도 다시 조사하는 게 합리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 안 하려면, 차단을 안 시키려면 이 예외조항, 단서를 두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안전조사 대상으로 테이블에 올리지 말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새로운 증거라든지 진술이 나온 경우는 허용해야 되는 건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기존의 조사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조사기관에서 하면 되거 여기서 다시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 법을 가지고 과거 건을 다시 소급해서 끌어와서 조사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조사기관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온든지 새로운 어떤 자료가 나온다면 그 조사기관에 맡겨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꼭 이 조사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존의 조사기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재조사하는 부분은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 조사기관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조사하는 거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과거를 소급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국회 소관 상임위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소위원장 서범수** 그건 다수당의 입장이고요. 저 같은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같이 야당이 소수인 경우에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견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야당이 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여당이 하자 하면 방법이 없고 야당이 하자 하면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괜히 이게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소급효 말고 앞으로 나가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제가 진상규명 하자는 건 동감입니다. 저도 진상규명 하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하자.

그러면 이 법만으로도라도 행안위로서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이렇게 우리가 잘 하겠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고 이걸 법을 만들어서 과거 걸 다시 들춰서 나와 가지고 하면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우후죽순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피해자들이 와서 정치인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면 과연 그걸 이겨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럼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하자' 하면 과연 그게……

저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늘상 하는 이야기, 소급효, 소급입법 금지 아닙니까? 그런 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지, 저는 그런 걱정들이 많아요.

○**옹혜인 위원** 사실 소급입법은 어떤 처분과 관련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위원장님의 우려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무분별하거나 혹은 사실 국회의원들로서는 정치적 압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야당 위원으로서 이런 조항은 야당을 위한 조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이, 이런 법안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부부처나 이런 곳에서 좀 투명하게 혹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재난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사회적 통합성 같은 것들을 유지시켜 나가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여 가지고 오히려 이 2호 같은 경우는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가 잘 못 할 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소위원장 서범수** 안 받아 주는데요.

○**옹혜인 위원** 야당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삼풍 때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의율해서 어떻게 처벌할까를 위주로 해서 진상조사라는 걸 해와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는 진상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범인이야,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를 찾아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비근한 예로 세월호 참사 때도 벌어지고 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양쪽에서 양당에서 추천했을 때도 17명이었을 텐데 15명이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지 전문가들끼리만 모아 놓고 물리적 참사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반성들의 끝에 이 법이 나왔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의율해서 처벌할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보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려서. 그래서 과거 사건 중에서 법적인 것 따지다 놓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거나 꼭 해야 되는 과제도 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진상규명이 웬만큼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그래도 그런 여지를 남겨 놔야 되는 것은 이런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구성되어 있는 15명 인원예다 조사단을 붙이려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지요, 결국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거 하자’라고 3개만 리스트를 꺼내도 당연히 상대 진영이나 언론에서는 ‘행안위원 궁금하다고 500억 쓸까?’ 이런 보도가 나올 거거든요. 이것이 미치는 저항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한두 가지 사건에 대한 아주 깊은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막 궁금한 대로 갖다 사건을 얹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예산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충분히 제어가 될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때 생겼던 문제 중에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진행, 그렇게 우습게 이걸 만들었다가는 그거는 어느 정당이든 여론의 철퇴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 법이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제일 먼저 나올 게 뭐냐 하면 이태원 참사. 그렇지요? 세월호 그다음에 무안공항 참사, 우후죽순적으로 여기에 해 달라고 엄청나게 오실 거라고.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이거? 그러면 다른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또……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가는 게 맞지 과거 걸 다시 끌고 와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하고 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25개의 조사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적용시킨다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 진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는.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호의 단서조항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끝난 것 또 갖고 오거든요. 끝난 것 갖고 온다고요. 이거 아까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행 중인 것만 제외하지 끝난 것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 것도 갖고 온다고요.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무안 사고도 끝나면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가……

○**소위원장 서범수** 또 갖고 올 수 있다고요.

○**양부남 위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이 법 만들고 난 뒤에, 법은 항상 미래 효과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계셔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의 대표성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법 스타트를 하고 진행하면서 조금씩 바뀌 가는 것도 안 맞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옹혜인 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중에 경과 규정을 뒤서 사고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양부남 위원 잊어 버렸는데, 수정의견이 뭐였지요?

○옹혜인 위원 수정의견은 여기 써져 있는 것이고요.

○양부남 위원 어디 있어요?

○옹혜인 위원 45페이지에 18조의 3항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안대로 통과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은 부칙으로 뒤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려면 1호로만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1호?

○옹혜인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지요. 만약에 부칙조항을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돼야지요, 부칙이니까.

○옹혜인 위원 그것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결론 안 날 거 같은데……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이거는 이 정도 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시지요. 제가 굳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좀 더 조사를 잘하고 피해자분들한테 그게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소급해서 뭘 하자고 하는 부분이 맞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옹혜인 위원 소급해서 뭘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과거에 끝났던 사고도 다시 하자고 막 들어올 것 같으면 위원님들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 것은. 아예 법으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은 시행되고 난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거라서 하고 끊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열어 놓으면 어떤 것은 받아 주고 어떤 것은 안 받아 주고 하기에 위원님들도 좀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으실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양부남 위원 아니, 수정의견대로 문리 해석을 하면 사고조사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 놓는데 뒤에 부칙조항에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부칙조항을 달자는 것이지요.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18조 3항 3호 단서에 보면 ‘1항에 따른’, 1항이라는 표현도 좀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소위원장 서범수 좀 이상해요.

○양부남 위원 이 표현도 고쳐야 됩니다. 1항에 따른 조사는 당연히 독립기구에 의한 조사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부장한테 물어보니까 1항은 기존 조사기구를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 조사기구에 따른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로 돼 있어요. 물리 해석대로 한다면 조사가 끝나 버린 사건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칙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냥 진행하시지요.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논의하여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걸 이 정도로 진행하는 걸로 하시지요.

저는 그래 보는데, 우리가 물론 선한 마음을 다 믿어야 되지만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 좀 양보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고 소급적용 부분은 안 된다고 부칙에 다시 넣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옹혜인 위원 저는 2호 정도는 좀 열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2호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저한테도 옛날에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올려 보자’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기가 판단 기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김성희 위원 저는 그거 하기가 되게 쉬울 거라고 보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건조사를 한번 시작하려면 밑에 조사단 밑에 무슨 자문단 꾸리고 어찌고저찌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수반해서 6개월에서 1년씩 조사를 하는 일을 국회에서 쇼핑하듯이 몇 개를 골라 가지고 ‘나도 민원 들어왔는데 내 사건도, 내 사건도’ 해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고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잘못된 것이 재판에서 지적된 사건 정도가 상임위에 올라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개인적인 어떤 민원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당에서 이것을 좀 하자, 어떻게 할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갖고 거론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안위의 부분에서 좀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거야 지금 있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게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기구인데 무슨 검찰이 쓸어 가듯 압수수색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의 구조적 모순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지는 일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당에 유리한 사건을 밀어붙이는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소위원장 서범수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김성희 위원 정치는 결국 역풍 싸움인데 저는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블리……

○소위원장 서범수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저도 여당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

르겠는데 이게 당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성희 위원** 저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 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가 있는 사항들이라서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상황 보고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위원장님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저는 너무 이해하고, 사실 이 법을 만드는 취지도 우리가 재난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계속 싸우게 되고 유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도 당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을 막고자 이 법을 제정하고 조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피해자들의 입장이거나 진상규명의 필요성 측면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두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열어 놓되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치들로 제한을 걸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이 조항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이 법의 제정의 취지와 처음에 이 법이 제안될 때 시민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제안의 취지하고도 조금 멀어지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일단 부칙에 넣느냐 마느냐의 얘기니까요.

○**옹혜인 위원** 그러면 부칙에서 이거 말씀하시지요.

○**김성희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공회전 되고 있으니 일단 부칙까지 진행해 놓고……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예, 수정의견대로.

○**소위원장 서범수** 아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대로 45페이지의 3호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로 하면 종료된 사건은 제외된다 이런 문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단 종결을 하고 나중에 부칙조항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단지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사위원회를 만들면 조사를 하는 지원부서를 두거든요. 그래서 각 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회하고, 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잘 협조가 안 돼요. 여기 법조항에 보면 조사위원회가 각 개별 조사위원회라든지 관계부처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국회하고의 관계,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예 조사위원회에 물어보면 ‘우리는 조사위원회라서 모

룹니다. 지원부서에 물어보세요’……

지원부서는 어디에 만들 겁니까? 예를 들면 조사위원회는 총리실에 만들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지원부서는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원부서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행안부에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총리실의 조사위원회에다 물어보면 ‘우리는 몰라요. 지원부서에 물어봐요’ 또는 ‘행안부에 물어봐요’, 행안부에 자료 내야 하면 ‘우리는 실무자라서 몰라요. 조사위원회에 물어보세요’ 이게 핑퐁 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총리실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안 나아요? 왜 행안부에서 그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지금 총리실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총리실하고 행안부하고 나눠 버리면 딱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행안부에 사고 넣었는데 ‘사고와 관련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사고조사 결과를 좀 해주시오’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조사위원회 총리실에 물어보세요’ 그럴 거라고. 그러면 총리실에 물어보면 ‘지원부서는 거기 있는데요? 행안부에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쪽 핑퐁 한다고요. 그래서 총리실에 두는 게 안 맞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 나아정** 지금 수정의견에는 일단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조사위원회에?

○**전문위원 나아정** 예, 국무총리 소속에 조사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는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취지를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의 지원조직도 국무총리실에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18조, 19조는 수정의견대로 가고 다만 18조 3항 3호에서 단서조항에 양부담 위원님 비롯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로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은 그래 놓으시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리고 부칙 적용례 신설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전문위원님, 한 번만 다시 불러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옹혜인 위원** 예.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기억과 추모·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조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1호부터 6호까지 나열을 하고 있고요.

안 제20조에서는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연·보조와 관련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20조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기억과 추모 또는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용을 출연·보조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위탁받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출연·보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19조와 관련해서 기억과 추모의 대상을 좀 명확화해서 기억과 추모의 대상을 ‘안전사고’에서 ‘안전사고와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관련해서도 사업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52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전사고 및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로 안전사고와 피해자를 추가를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자구를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사업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유사 사업례들과 비교해서 정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항에서 3항의 추모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는 각 호의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의견수렴 하는 조항 그리고 5항에서는 출연·보조 의무화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혜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56페이지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지원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1조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에서 국가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22조에서는 지원체계 확립 등에서 국가등은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내용, 국가등은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양성·확보,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등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제21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하여서 제정안이 관련 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고.

안 제22조(지원체계 확립 등)와 관련해서는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문구를 수정해서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전담기구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지원체계 확립에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운영할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과, 안 제23·24조 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및 벌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대한 지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용도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정보 누설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정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누설에 대해서만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보 누설 금지 범위에서 안전약자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고, 벌칙조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과 관계없이 일반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통해서도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피해자에 관한 정보라고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데요.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문서, 자료 또는 물건 등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형량이 해당하는 거고 이 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형량에 맞추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부칙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조사위원회 항목 중에서, 여기도 보면 조사위원회 임기가 없거든요? 조사위원회가 위원들의 임기 그다음에 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무한정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기간을 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사기간?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것은 사고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비상임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위원장님 말씀……

○소위원장 서범수 그 조항도 좀 넣어 주시고.

조사기간도 무한정하기가 좀, 안 그러냐…… 어느 정도 한정을 시켜 놓고, 1년이면 1년 이내 끊어 놓고 플러스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고가 크고 조사할 범위가 넓다 보면 기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옹혜인 위원 어떤 취지이신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다만 조사위원회가 상설이다 보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는 그냥 위원회 내의 업무로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을 법률로서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게……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실질적인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1년이면 1년, 최대한 1년 안에 그리고 상황 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뒤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그냥 조사기간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다른 조사기구나……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런 입법례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소위원장 서범수 없어요, 기간?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소위원장 서범수 조사기간 두는 데가 없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조사기간에 대한……

○전문위원 나아정 개별 참사법에서는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개별 참사법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한데요.

○옹혜인 위원 그것은 약간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은 상설기구여 가지고, 그러니까 상설기구의 업무들을 그러면 1년 이렇게 법률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못 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못 정할 것은 아닌데 워낙 사고 자체가 다양한 사고가 나서, 예를

들면 6개월 안이면 끝날 수도 있고 1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양부남 위원** 훈시 규정을 두시지요, 선언적으로. 사고 후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

○**옹혜인 위원** 그것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는 합니다.

○**양부남 위원** 선언적으로 둡시다.

○**소위원장 서범수** 선언적인 의미로 하나 넣어 주세요, 거기에. 가능한 조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양부남 위원** 조속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한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사고조사종합계획을 할 때 거기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간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조직·제도의 신설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와 관련된 13조 그리고 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14조, 안전영향 분석·평가와 관련된 15조,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등,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18조·1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난안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 중 제정안의 체계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6개월부터 시행하되 10조, 13조, 15조, 18조, 19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 동의하고요. 다만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의 시행시기도 대부분 지금 1년 뒤에 시행하는 것들이 재난법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조항이어서 재난법 개정의 발효시기도 1년으로 같이 해 주시면 발효시기와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1년 후?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시행시기를 1년으로 하는 게 안전기준 또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지수 공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난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재난법에서 삭제되는 시점과 이 법에서 발효되는 시점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옹혜인 위원** 그러니까 부칙 2조의 시행도 1년으로 두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부칙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1조에서 제18조, 제19조,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찬성합니다.

○**양부남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만 건데요. 부칙조항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아니면 공포되고 난 뒤를 할 것이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의논을 좀 드려야 되는……

저는 소급효 안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은.

정부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것을 보면 18조 3항 1·2·3호가 있는데 1호와 3호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없는 것으로 하고 2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회가 의결할 때도 그 앞에다가 ‘새로운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위원님들 어떻게……

저는 아직 그것은 양보할 마음이 없는데요.

○**양부남 위원** 저는 본부장의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문구만 바꾸는 건데……

○**양부남 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만…… 또 국회의 의결로 한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전제조건도 몇 개 두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여야의 합의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지요, 2항은.

○**소위원장 서범수** 여야의 합의로.

○**옹혜인 위원** 합의 같은 표현이 법률안에 들어가기도 하나요? 여야의 합의? 저는 그런 조항은 못 본 것 같아서……

○**양부남 위원** 그런데 지금 2항에 대해서 예외를 두었을 경우에 제일 염려하는 게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또 소수당의 의견이 무시되는 우려라고 했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런 부분들.

○**양부남 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조건, 하나 실체적 문제에 있어서 조사가 끝난 사건이지만 새로운 증거 발견 등 그러한 새로운 진실을 규명할 전제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 절차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 정도면 저도…… 그래 되면 사실은 당과 당의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서 할 수는 있지 않나 저는……

○**양부남 위원** 실체적으로는……

○소위원장 서범수 실체적으로 새로운 증거라든지……

○양부남 위원 절차적으로는 여야 합의.

○소위원장 서범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사실 이 논의를 해 오는 과정을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법안이 벌써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님이 당시에 가장 먼저 발의를 하셨었고……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우리 소위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이 법안이 처음에 제안되고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재난조사 혹은 재난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쟁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절차적으로 이 과정들을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갈등하거나 그 갈등 속에서 피해자거나 유가족들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을 좀 방지해 보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존의 재난참사 조사라고 하는 것이 충분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정치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회가 가능성 자체를 닫아 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회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 자체는 정부에서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해주십사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조율도 하고 관련된 단체들과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 발의한 의원들 사이에, 정부 사이에 많은 조율과 또 양보가 상호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수정 의견대로 의결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안 됩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지요. 용혜인 위원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또 법률 만드는 게 정치적 과정일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 만족은 안 하시더라도 이게 서로서로 또 정치적인 타협, 아까 우리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면 그건 가능하겠단 싶은데……

○용혜인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여야 합의를 법률안에 명시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부대의견 다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 관계없이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된다, 정치적인 쟁점사항이 되면 안 된다,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자라고 여야가 다 같이 나설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해 버려야지,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자 하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김성희 위원 이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본질적인 법의 제정 취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송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압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만큼 진전을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왔던 것만으로도 저는 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좀……

○옹혜인 위원 이거는 제가 동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양부남 위원님 딱 좋은 안을 내서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요.

○양부남 위원 아니, 제 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게 베스트고,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영 양보를 못 한다면 이런 생각도 있다는 취지이지.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이걸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수정안이 좋고 그런데 이게 영 탐탁지 않으시면 제가 내는 이러한 안, 생각도 있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도 어떻게 좀 타협을 해 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마침 우리 양부남 위원께서 그런 안을 내셔서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의견을 받아 수용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문구를 법에 넣기가 적절치 않다면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소위원장 서범수 ‘여야 합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나요, 보통?

○전문위원 나아정 교섭단체 간 합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되면 융혜인 위원은 빠지실 텐데……

○옹혜인 위원 그래서 원래 수정안은 소급적용에 대한 부칙이 전혀 없는 안인데 1호에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2호에 한해서 소급적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의 제한적인 소급적용 불가 부칙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조항 3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먹고 온 거고, 그런데 소급효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이 법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나게 우리 국회가 많이 진전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옹혜인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상정도 해 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체를 소급적용 불가 부칙을 거는 것은 저는 사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되면 저도 이거는 조금 양보하기가 어려운데……

잠시 그러면 한 10분 정회하시지요. 고민을 좀 해 보시지요.

○옹혜인 위원 다시 열어 주실 거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하셔야지요. 오늘 이걸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바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그럼시다.

위원장님, 전체……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표결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김성희 위원 아니, 표결은 안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 하도록……

○양부남 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시지요. 지금 우리 민주당도 몇 명 참석을 안 했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표결을 하니 안 하니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소위에서 그냥 결론을 내고 넘깁시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표결은 안 하는 걸로.

○박정현 위원 우리 간사께서 표결은 안 하는 걸로 약속하셨으니까……

○김성희 위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되면 표결하고 나가야지요.

○김성희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해야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다고요.

○김성희 위원 아니, 생명안전기본법을 어떻게 저희가 표결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도록……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도 이걸 표결을 안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김성희 위원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한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칙조항 논의하던 것은 2호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한 것은 인정을 한다 이런 거지요?

○양부남 위원 예.

○김성희 위원 교섭단체가 간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간사와 위원장 간에 합의를 하면 모두가 합의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법 적용을 밖으로 빼면,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하면 원내대표끼리 이것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상한 구조가 돼서……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럼시다.

용 위원님.

○용혜인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1호 예를 들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안전사고 그다음에 3호의 부분은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고……

○**김성희 위원** 그것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로의 사고로 한다라고 부칙에 집어넣는 걸로……

○**소위원장 서범수**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상임위 의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김성희 위원**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때문에 대충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원만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

○**소위원장 서범수** 아까 오전에 하던 것 정리된 게 있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나눠 드리는 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이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회 성격인데요. 저희가 이 문구를 조정을 하면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을 했는데 자문위원회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을 빼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둔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정의 규정에서 목격자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가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지금 나눠 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다만, 안전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을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직접 목격. 현장 목격……

○**전문위원 나아정**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소위원장 서범수** ‘직접 목격’ 하면……

○**전문위원 나아정** 예, ‘직접 목격’ 하면 사실은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규정을……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어떻습니까?

○**양부남 위원** 저는 취지가 직접……

○**신정훈 위원** 직접이 다 포함돼 있어요.

○**양부남 위원** 포함되지만 더 명확하게 ‘현장 목격’으로 구체화해서 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소위원장 서범수** 현장 목격한 사람……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안전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소위원장 서범수** 현장 목격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참여를 요구할 권리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국가의 책무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요. 이 부분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다음 16페이지에 국가등의 책무조항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6조 3항에 보시면 여기에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 과정에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은 그대로 살려 놓고, 수정안은 살려 놓고 6조 3항에 이 조항을……

○전문위원 나아정 예,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 과정에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라는 문구로 정리를 했고 피해자의 권리 부분에서는 그냥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로 남겨 두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부남 위원 6조 3항을 그러면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어떠한 참여 요구의…… 여기에다 넣는다 이 말입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예, 권리는 그대로 놔 두고, 권리는 권리 조항이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이게 국가등의 책무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조항보다는 국가등의 책무조항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리고 다음 사항이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추가하자고 말씀을 하셔서요. 9조 제5항의 내용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령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다음에 아까 사고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나아정 그다음에 오후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사고조사위원회 관련해서 44페이지입니다.

18조 제3항 1·2·3호가 있는데요. 2호와 관련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결로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이게 조금 문구가 거칠 수는 있는데요. 이 취지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제18조제3항제1호와 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기하고 조사기간과 관련해서 훈시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비상임위원 임기나 조사기간 훈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문구를 만들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조사기간은 훈시 규정으로 하고 이 경우 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은 안전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규정으로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을 넣었고요. 비상임위원 임기와 관련해서는 19조 제3항에 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것은 없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마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안전기본법상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벌써 끝났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이것은 법하고는 관계없다면서요? 이 모법하고는 관계없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법하고는 관계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지, 아닌가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 이야기지요? 진짜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제가 그 뒷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

○소위원장 서범수 22페이지 보실래요? 6항에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안전위원회는 뭐니까? 뭐예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겁니까, 이 법하고 관계없이?

대답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은 명확하게 입법부 국회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법을 만들기도 전에,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어련히 통과되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통과되겠지,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행정절차상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모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벌써 만들어서 입법예고 다 끝났고 국무회의에 올릴 거잖아요, 5월 1일 날.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런 절차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법 없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내가 몰라요. 그러면 좋다, 모법에 몇 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엄연히 이 법을 발의를 해 놓고 입법공청회까지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행안부에서 법을 심의하기도 전에, 법을 의결하기도 전에 이 법에 의해서 안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부에서.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출범하는 것을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 유감의 표명은 해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장 서범수** 전체회의 때 장관님이 나오셔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가야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 어떻습니까? 분명히 절차를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절차를 잘못했고 이거 행정부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선을 넘은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저희가 국회를 무시……

○**소위원장 서범수** 무시한 거지요. 국회를 무시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네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국회가 뭐가 필요 있어? 법이 왜 필요 있어? 우리가 대통령령 만들어서 하면 되지’.

생명안전기본법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몰랐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의를 하고 통과되리라고는 생각 못 했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 법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절차를 좀 밟아서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국회를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상임위 전체회의 때 오늘 장관님 나오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장관님이 연가 중이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차관님이라도 나오시면 일단 유감 표명부터 시작하고 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체회의는 5시쯤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오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성희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주호영 한병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주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안전정책국장 서주현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